

# 「드파인 광안」기관추천 특별 공급 안내문

## I 공급내역 및 일정

- 위 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1240-38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지하 2층 ~ 지상 31층, 10개동 총 1,233세대 중 일반분양 567세대
- 입주예정시기 : 2026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단위 : m<sup>2</sup>, 세대)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세대별 계약면적(m <sup>2</sup> )					공급 세대수 (예비)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 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 주택	059.8951	59	59.8951	22.2144	82.1095	40.2527	122.3622	9(45)
	078.8636	78A	78.8636	24.5296	103.3932	53.0006	156.3938	7(35)
	078.2765	78B	78.2765	25.9660	104.2425	52.6061	156.8486	10(50)
	084.9514	84A	84.9514	25.6157	110.5671	57.092	167.6591	7(35)
	084.8923	84B	84.8923	26.9088	111.8011	57.0523	168.8534	23(115)

- ※ 해당 주택공급면적 및 세대배정은 인허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입주예정월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기관추천 유형별 배정세대 내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85m<sup>2</sup>이하 세대수의 10%범위 내 공급 (단위 : 세대)

구분	59		78A		78B		84A		84B		합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2	(10)	1	(5)	2	(10)	1	(5)	6	(30)	12	(60)
	장기복무제대군인		1	(5)	1	(5)	1	(5)	1	(5)	2	(10)	6	(30)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5)	1	(5)	1	(5)	1	(5)	3	(15)	7	(35)
	중소기업 근로자		2	(10)	1	(5)	2	(10)	1	(5)	5	(25)	11	(55)
	장애인	부산광역시	1	(5)	1	(5)	2	(10)	1	(5)	5	(25)	10	(50)
		울산광역시	1	(5)	1	(5)	1	(5)	1	(5)	1	(5)	5	(25)
		경상남도	1	(5)	1	(5)	1	(5)	1	(5)	1	(5)	5	(25)
계		9	(45)	7	(35)	10	(50)	7	(35)	23	(115)	56	(280)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II 공급일정 안내 (예정)

구분	일정(예정)	비고
대상자 명단 회신	2024.08.13.(화) 오후 1시 까지	• 담당자 : 협조 공문 참조
입주자 모집공고	2024.08.09.(금) (예정)	• 일간신문, 당사 홈페이지 ( <a href="https://www.df-ga.co.kr">https://www.df-ga.co.kr</a>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건본주택 오픈	2024.08.09.(금) (예정)	• 당사 건본주택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179-136번지
특별공급 청약	2024.08.19.(월) (예정) (인터넷 청약신청)	• 인터넷 신청(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09:00 ~ 17:30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 접수 가능 (자격입증 서류 지참, 건본주택 신청 10:00 ~ 14:00)
당첨자 발표	2024.08.27.(화)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개별조회
당첨자 서류접수	24.08.30.(금) ~ 24.09.05.(목) (예정)	• 당사 건본주택
계약 체결	2024.09.09.(월)~2024.09.11.(수) (예정)	• 장소 : 당사 건본주택 • 시간 : 10:00~16:00

- ※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여부를 확인 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 정부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선정 대상자는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①금융인증서 ②네이버인증서 ③KB국민인증서 ④토스인증서 ⑤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보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가능합니다.
- ※ 상기 일정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III

## 특별공급 유의사항

#### ■ 신청자격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무주택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3.11.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에 의거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되어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sup>2</sup>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는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sup>2</sup>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p>			
청약자격요건	<p>[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p>			
	구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m <sup>2</sup>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 <sup>2</sup>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 <sup>2</sup>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아래의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자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청약통장 불필요)</li> </ul>		
추천기관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청약통장 불필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부산보훈지청 보상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애인 [청약통장 불필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b>[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b></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ul>		

■ 유의사항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의거하여 부부의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1인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 중복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가 모두 당첨이 되는 경우 신청 접수일이 앞선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봅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 수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Ⅲ

특별공급 유의사항

- 견본주택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179-136번지
- 홈페이지 : <https://www.df-ga.co.kr>
- 분양문의 : 051-757-8856

※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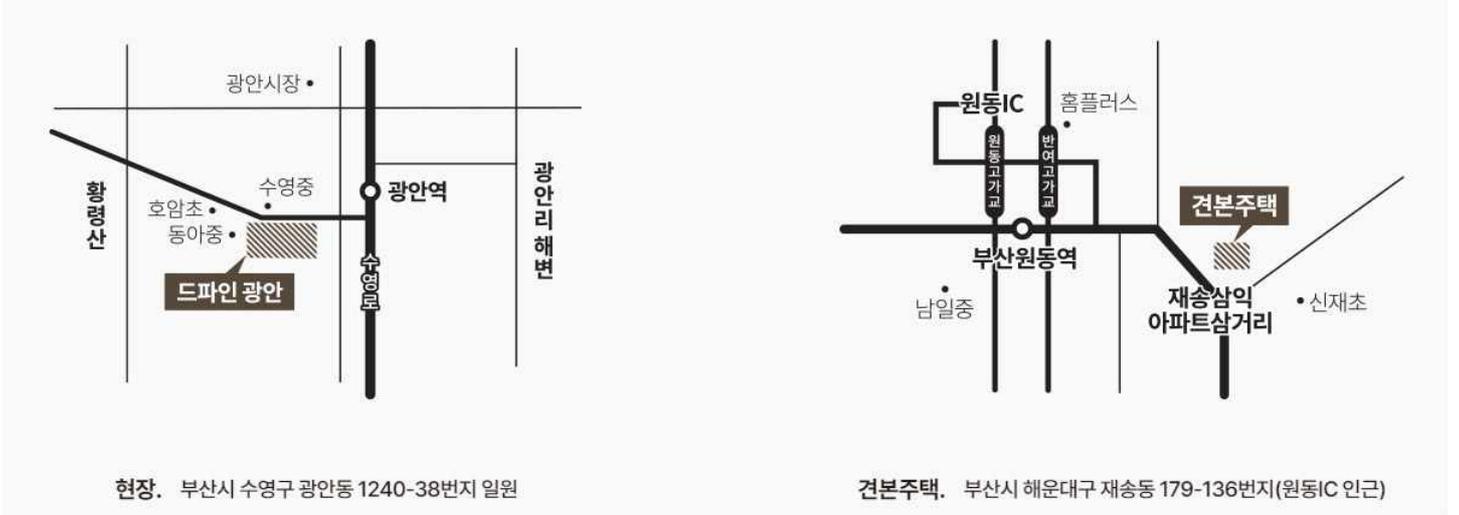


# 별첨 : 1

■ 현장 위치



※ 상기 지역도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지역도에 기재된 교통 및 각종 개발계획, 학군 배정 등은 사업주체나 해당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연기,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현장.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1240-38번지 일원

건본주택.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179-136번지(원동IC 인근)